

韓國企業의 換危險管理

閔 相 基

(서울大 經營大 教授)

I. 序 論

1. 研究의 背景 및 目的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에 生產을 위한 資源과 資本이 부족하고, 판매를 위한 市場의 협소 때문에 필연적으로 去來의 상당부분을 對外去來에 의존하면서 성장해 왔다. 국제거래를 수행하는 기업들은 자신들의 실물차원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환위험이라는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어, 노력의 성과의 상당부분을 잠식당하며 아울러 합리적인 예측에 근거한 安定的 經營에도 위협을 받게 된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원貨의一方의 平價切下에 힘입어(?) 기업의 주된 수익원인 수출에서 예기치 않았던 이익을 누려왔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환위험을 管理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별 필요성을 못 느껴왔다. 그러나 최근 환율변동의 급격화, 국제화의 심화에 따른 환노출규모의 증대에다 원화마저 平價切上의 추세로 접어듦에 따라 기업들은 환위험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관리체계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환위험관리의 수준은 몇몇 외국은행, 종합상사, 해외의존도가 큰 대규모제조기업을 제외하고는 선진제국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특성에 맞는 환위험관리체계의 구비가 많은 기업에 있어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게 환위험

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方向提示를 해줄 수 있는研究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질문서를 이용한 환위험관리 실태조사가 아닌, 하나의 기업의 내부적인, 즉 行動的인(behavioral) 측면 까지를 포괄한 管理論의 視覺의 事例研究는 전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비추어 우리나라 기업들 중 환위험관리 측면에서 가장 선도적이라 할 수 있는 4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그 실상을 가능한 한 그대로 기술하고자 한다. 아울러 관리의 각 측면을 24개의 세부적인 評價 및 비교요소로 세분하여 4개의 기업이 가지는 특징을 보다 선명히 드리낼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이러한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는 換危險管理上の 特徵을 파악하고, 여타 후발 기업들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환위험관리체계를 구비함에 있어 하나의 시행착오라도 줄이도록 방향제시를 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研究의 内容 및 方法論

1) 事例研究 對象企業의 選定: 대상기업은 우선 기존의 「韓國企業의 換危險管理 實態에 관한 연구」¹⁾ 자료에 근거하여 상대적으로 관리수준이 높다고 인정되는 종합상사와 제조기업들로 업종을 한정하였다. 이들 업종에 대해 우리나라 5대 그룹의 대표기업 2개씩, 10개사에 대해 1차 인터뷰를 하였다. 이 중 관리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1개 그룹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그룹에서 관리형태가 독특하고 수준이 높은 4개社(종합상사 3개사, 전자부문 제조기업 1개사)를 선택

1) 기존의 실태조사: ① 趙大宇, 張吉洙, “韓國企業의 換危險管理 實態調査” 忠南大學校 經商論集, 1986.

② 崔鴻, “韓國企業의 換危險管理 實態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論文, 1987.

하였다. 종합상사와 제조기업은 환위험관리에서 각각 특징이 있으므로 양자를 모두 포함시켰다.

2) 事例研究의 내용: 사례연구의 내용은 크게 보아서 4가지(보다 세분하면 8개 항목)로 구성된다. ① 換危險管理政策(管理目的, 管理對象換露出) ② 組織體系(組織構造, 業務흐름) ③ 情報體系(換率豫測, 換露出把握) ④ 意思決定體系(意思決定흐름, 内部統制)

이러한 4가지 요소는 전체적으로 환위험관리 체계를 구성한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단순하게 관리지침상에 드러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의 기술에 끝나지 않고 4개 기업의 특징을 보다 명확히 분석하기 위하여 각 항목들을 주요 잇슈가 되는 세부항목별로 나누어 각 기업의 실태를 비교분석하였다. 한편 사례대상 기업이 다소 비협조적인 것을 감안 비교의 기준요소를 직접 질문하기보다는 이 요소를 대신할 수 있는 변수를 통해 間接的으로 推論하는 방법을 병행하였다.

3) 資料의 源: 본 사례연구의 주요 자료원은 對象企業의 換危險管理 담당자와의 직접적인 인터뷰의 결과이다. 담당자란 과장 또는 代理직급의 딜러(dealer) 또는 콘트롤러(controller)들을

말하는데 의의로 환위험관리 意思決定(커버의 시점, 커버의 범위, 커버의 방향, 커버의 기법 결정 등)의 대부분이 이들에 의해 내려지고 있으며 조직의 상충은 결제를 통한 형식적인 참여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 내지 사실 그대로의 대답을 위해서는 담당자와의 인터뷰가 오히려 적합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담당자들은 기업 전체적인 사정 등에 의한 조정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무관하다는 약점을 지닌 바 2차적으로 조직의 상충과 협업부서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문제를 보강하였다. 또한 주요 외국환은행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였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실무담당자와 최종검토하여 사례연구를 마치었다.

3. 研究의 構成體系

본 연구에서는 Ⅲ장에서 아래 <表 1>과 같이 8개의 환위험관리체계의 하위체계에 대해 각각 3개씩의 評價項目을 설정하여 4개의 기업의 실태를 記述·比較분석하였다. 이에 앞서 Ⅱ章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높고자 8개의 下位體制 각각의 성격과 주요 잇슈들을 분석·요약하였다.

<表 1> 換危險管理 事例研究를 위한 體系

	下位體制	評價項目(비교의 기준요소)	評價項目의 내용 및 間接推論을 위한 고려
管理政策	管理目的	管理目的의 내용과 明示化, 實際換差益 도모의 程度, 最高經營層의 관심도 및 신뢰도	내용 및 明示化의 여부·수준, 암묵적 관행 및 통제수준, 선택적 헛지의 사용비율 및 조건의 제도화, 거래동기, 관리전담부서의 수준, 그룹 차원 포함여부
	管理對象	企業의 換露出 特性 및 認識度, 管理對象 換露出의 범위, 그룹次元 換露出의 포함여부	主要 거래통화, 통화별·항목별·기간별 파악의 정체성, 測定對象과 認識時點에 의한 分類 모델의 제시, 정보의 교환인가 거래의 대행도 포함하는가.
組織體系	組織構造	換管理 組織의 기업전체에서의 위치, 换管理組織內 業務分掌의 適正, 關聯部署와의 조정을 위한 제도	組織의 規模·水準·實際的 位置(자체결정 능력보유 여부), 부서간 업무의 중복 여부, 意思決定 事項, 委員會조직의 구성, 관련부서의 통제정도
	業務흐름	業務處理過程, 業務處理段階別 所要期間, 内部專決 規定의 내용	영업부문과 재무부문의 일상적·예외적 업무 흐름, 露出發生-把握-意思決定-評價의 단계별 소요시간, 明示化여부, 專決規定의 金額, 예외 규정

情報體系	換率豫測	情報源의 適正性과 選擇基準, 情報의 수집·처리·확산·저장과정, 情報의 예측에의 반영도	情報源의 리스트, 취득정보의 내용과 비용, 각process의 담당자, 보고서의 내용 및 빈도, 객관적 반영기준의 구비여부
	換露出現把握	情報源 및 파악의 방법·절차, 電算시스템 이용의 程度, 豫測換露出 및 잠재적 환손설계산	전산시스템을 통해 파악되는 환노출내용, 출력방법
意思決定	意思決定権限	意思決定権限 및 責任, 커버技法使用內容과 우선순위 고려과정(계약요인), 의사결정 내용의 수정 및 취소과정의 제도화	상위管理層의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내용, 지침상의 명시화여부, 관행
	内部統制	딜러-오피레이터-콘트롤러의 相互 견제, 換專擔部署의 管理評價, 社內先物換制度의 구비	업무분장, 확인절차 및 회수, 評價基準

II. 事例研究를 위한 理論的 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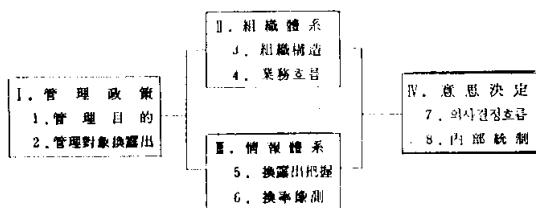
本節에서는 事例研究에 있어 換危險管理體制 및 下位體制의 내용과 <表 1>에 나타난 24개의 評價項目(즉, 比較의 基準要素)이 가지는 意味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그 이론적 배경을 간략하게 각 하위체계별로 기술하였다.

사례연구의 理論的 근거이기도 한 본절에서는 특히 각 하위체계별로 이론상 주요 잇슈(issue)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었다.

管理政策은 管理目的과 管理對象換露出로 구성되어 관리체계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組織體系와 情報體系는 환위험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3가지 체계가 갖추어지면 기업은 각각 독특한 意思決定體系를 갖게 되는데 편의상 환위험관리의 統制와 評價에 관한 항목을 内部統制라 이름붙여 설명하였다.

이상의 사례연구 구성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事例研究의 構成



1. 管理目的

換危險管理란 현재 또는 미래의 환율변동으로부터 기대되는 역효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자 實物 및 貨幣資源을 體系的으로 배열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위험관리의 1次的目的은 危險(또는 損失)의 最小化이지 利益의 最大化가 아니며 그 本質은 다른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환율의 변동으로부터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은행과는 달리 제조기업이나 종합상사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안정 확보가 경영의 1차적 목표이며 따라서 손실의 최소화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외환시장의 주요 不完全性이 존재하는 오늘날에 있어 지나치게 損失의 最小化만을 고집하여 完全커버만을 하는 것은 조직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만들고 기회이익을 상실하게 하므로 실제기업에서도 어느정도 환차익의 도모를 명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각 기업의 국제화의 정도, 기업의 성격 및 능력수준의 차이에 따라 다르겠으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위험관리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서는 관리목적을 明示化하고 換差益도모를 추구하게 되는 조건을 세부지침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 管理對象

理論上으로는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환위험을 관리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측정하는데 마저 상당

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측정의 편의를 위해 환위험을 여러 유형으로 分類한 학자들의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엄밀성을 요하는 企業管理論的 觀點에서는 직접도입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기업의 관점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自社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자사가 관리해야 할 管理對象으로서의 환위험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환위험을 管理目的에 따라 ‘언제’ 認識하며 ‘무엇을’ 測定對象으로 해야하는가 라는 관리론적 사고에 기초하여 분류한 시도같은 것은 한 예로 들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환위험을 ① 인식시점이 特定日 인지 미래의 不特定日인지 ② 환위험관리의 측정대상이 現在去來인지 未來去來인지에 따라 분류한다.

a) 特定日은 例를 들어 契約上 明示된 滿期日 또는 貸借對照表日 등을 말한다.

b) 未來의 不特定日은 當該會計年度 以後의 繼續되는 期間中 어느 時點을 의미한다.

c) 現行去來란 i) 당해 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과거에 발생한 去來 ii) 當該期間에 滿期가 到來하는 당해년도 發生去來 iii) 當該期間에 發生하여 다음 期間까지 持續되는 去來를 모두 포함한다.

d) 未來去來란 確定되지 않은 未來의 非契約的 去來를 意味한다.

e) 現在確定 換危險(A型) : 이미 發生된 去來로서 어느 특정일에 換危險이 인식되었거나 未來의 특정일에 인식될 것으로 예정된 것으로서 認識時에 換危險이 現實의으로 知覺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두가지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i) 現在確定 實現換危險 : 이미 발생된 외화 표시거래에 대해 代金의 決濟로 거래가 완료되는 시점이전에 換率이 변동하여 換損益이 발생하는 경우로 전통적 분류방식의 去來의 換危險 (transaction risk)에 해당한다.

ii) 現在確定 未實現換危險 : 이미 발생한 외화표시거래의 결과에 대해 특정일, 즉 會計年度 末日에 自國通貨로 換算하므로써 인식되는 換危險으로 단지 換算만 하게 되어 실제적 現金흐름을 수반하지 않는다. 전통적 분류방식의 換算換

危險에 該當한다.

f) 現在未確定 換危險(B型) : 契約 價格의 調整, 販賣數量의 再調整, 契約의 中間解止 등과 같이 이미 거래가 발생하였으나 어떤 예기치 못한 狀況의 變動으로 인하여 未來의 不特定時點에서 인식되어지는 換危險을 가리킨다.

g) 未來確定 換危險(C型) : 未來에 發生하게 될 거래(非契約的去來)에 대하여 미래의 특정시점에서 인식될 수 있는 換危險으로서 未來機會損益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특정 프로젝트(project)에 대한 事前의 投資決定時에 나타날 수 있다.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미래 특정시점에서의 期待利益을 계산하기 위해 收支分析을 실시할 경우가 대표적인例이다. 이 부분에 대한 換危險의 인식은 종래의 분류에서는 포함하지 않았던 것이다.

h) 未來未確定 換危險(D型) : 換率變動의 영향이 미래의 일마동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繼續企業期間동안 ‘潛在的 未來現金흐름(potential future cash flow)’으로 測定하는 것을 말하며 狹義의 經濟的 換危險에 해당하는 것이다.

i) 總體의 換危險(E型) : 이는 위의 모두를 포괄하는 換危險概念이며 現在 및 미래의 企業價值의 變動 可能性으로 정의되는 소위 廣義의 經濟的 換危險에 해당하는 것이다.

3. 組織構造

換危險管理의 組織構造面에서는 환위험관리부서의 조직전체에서의 위상, 業務分掌 및 權限責任의 명백한 規定, 本社와 支社間・國際金融部와 現業部署間・國際金融部署內階層間調整(coordination)과 統制(control) 問題 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① 換危險管理組織의 企業全體에서의 位相
환위험관리 조직의 기업전체에서의 위상은 조직의 규모, 조직의 水準(이를테면 ○○課, ○○部, ○○팀) 등의 객관적인 사실로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인 位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환위험관리 실제 주요문제에 대한 자체적인 意思決定權을 환위험관리부문에서 갖고 있는가의 실제적인 문제이다.

② 業務分掌 및 權限責任

〈表 2〉 國際金融部署의 라인기능

딜러 (dealer)	오퍼레이터 (operator)	콘트롤러 (controller)
主要業務		
• 거래의 실시	• 거래의 체크	• 계약의 확인 및 결제
• 거래의 기록 및 장표처리	• 만기가 되거나 될 거래의 파일 처리	• 환노출포지션 보고 및 결제
• 포지션의 파악 및 감시	• 거래의 입력	• 거침의 이행 여부 확인

환위험관리에 있어 주요 라인기능으로는 딜러(dealer), 오퍼레이터(operator), 콘트롤러(controller)가 있다. 각 기능별 주요업무는 다음 〈表 2〉와 같다.

이들 기능의 분할은 사고나 오류, 부정을 막기 위한 2重統制(dual control)가 필요한 환위험관리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다.

③ 集權化 對 分權化의 問題

환위험관리체계는 일반적으로 집권적조직과 분권적조직체계의 2종류가 있다.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의사결정권한의 소재인데 환위험관리에 있어서는 이 문제가 本·支社間, 국제금융부와 현업부서간, 국제금융부내 라인계층간의 3차원

에서 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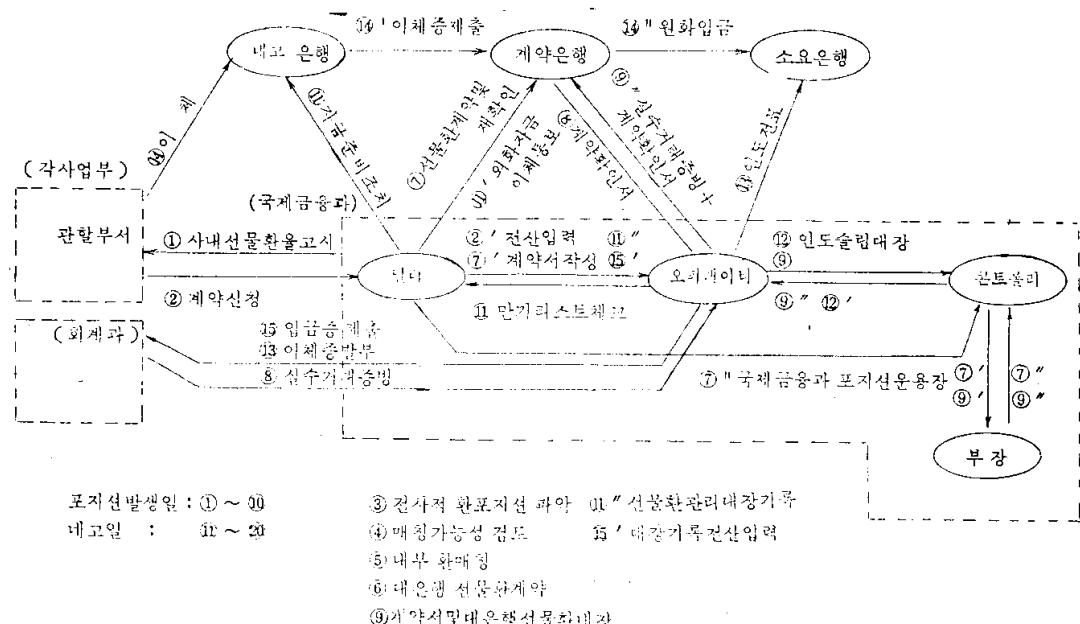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수하게 주력기업과 여타기업간의 논의도 있을 수 있다. 이 중 국제금융부와 현업부서간의 집권화와 분권화문제가 주로 관심이 된다.

전통적으로 환위험관리는 집권화하여 수행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는 買賣費用의 감소, 국제자본시장에의 접근의 용이성, 전문인력의 활용 등에 근거한다. 반면 分權化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는데 이는 분권조직의 인센티브문제, 거래흐름에 관한 정보우위를 근거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分權화의 효익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전사적으로 정보체계가 이루어져 있고 换마인드(mind)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분권화만 실시할 경우 중복커버에 의한 비용과다, 무관심에 의한 노출증가 등의 단점이 나타날 수 있다.

4. 業務흐름

일반적으로 환위험관리의 업무흐름은 일상적으로 영업 및 재무부문의 환노출의 발생보고→국제금융부내 환노출파악→국제금융부서내 환노출커버 의사결정→사후평가의 과정으로 구성

〈그림 2〉 A기업의 内部統制制度



된다.

이러한 일상적인 업무흐름은 각 기업마다 유사할 것이나 예외적인 업무흐름의 처리과정이나 업무단계별 所要期間에 있어서는 각 기업마다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국제자본시장이 實質時間帶를 기준으로 급격히 변동하며 따라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내부의 사결정이 간략화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환위험관리의 업무흐름을 A기업의 예를 통해 나타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5. 換率豫測

만약 特定인이 신문을 하루 일찍 볼 수 있다면 株式價格變動, 競馬場에서 우승마의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질 것처럼 외환시장에서도 환율의 정확한 예측으로 상상할 수 있는 收益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미래를 확실하게는 알 수 없으며 역설적이나 이러한 人間의 제약 때문에 초과수익을 바라며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환율을 예측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환율예측은 환율변동방향의 예측과 변동치의 예측의 2가지가 있을 수 있다. 방향의 예측은 판매, 원재료구입, 재고보유 등 사전적으로 환노출을 줄이려는 노력과 B/S상의 외환포지션 불균형의 헷지 등에 치침을 두므로 오히려 정확한 환율변동치의 예측보다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동방향의 예측은 外換損益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측을 해주나 이 위험을 先物換契約에 의하여 헷지를 하는게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만일 기업이 선물환계약을 헷지의 수단으로 하여 계약여부(또는 매도나 매입이냐의 결정)만을 결정하는데 환율예측을 사용한다면 정확한 변동치의 예측을 해야하며 여러가지 환율예측기법에 대한 평가시에도 선물환헷징권유정확도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6. 換露出把握

환노출정보는 환율정보와 함께 환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획득해야 할 핵심적인 정보의 하나이다.

환노출정보보라함은 앞서 환노출분류의 4가지 유형의 정보 모두를 포함하는데 현재 기업에서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현재시점에서의 확정 및 불확정 환노출(즉 A, B형)이다. 그러나 계획에 기초한 보다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事前的豫測(ex-ante forecast)에 따른 미래의 환노출의 파악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换率의 예측과 아울러 營業活動全般的 時間의 展開過程에 대한 파악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예측환노출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곤란시에는 매출액 對比 B/S 구성항목

<表 3> B企業의 換露出把握

營業部門				財務部門(장부이용)	
①자발적보고	②電算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법		③수시체크		
현재(1987.1.1 이후)	수출포지션 주문 확정 온-라인 입력 (환위험전가부여부 입력) 부서별 기타 통화 현황표 매주 수출 주문잔액파악 (전산실에 출력의뢰)	수입포지션 수입 L/C 개설 온-라인 입력 (위험 전가여부입력) 기타통화수입 L/C 개설현황표 매주잔액파악 (전산실에 의뢰)	선물환포지션 선물환 계약 외환거래기입장 선물환미인도 가능성이 큰 부서 계약잔액 산출	• 换率을 자주 문의하는 부서 • 포지션 보유 가능성이 큰 부서 • 본지사간 거래 비중이 큰 부서	외화부채포지션 • 통화별, 차입 항목별 파악(매주 1회) • 통화별 차입기 일별 차입예정 에 의거 매월 추정액 파악 (月 2회) 통화스왑포지션 • 통화별 기일 미도래분 • 통화별 교환기일에 의거 추정액 파악 선물환포지션 • 당부채무관련 포지션 및 추정액 • 투기목적의 포지션 별도파악
향후계획					
• 보고 즉시 사내 선물환계약 체결 방식(상규에 의해 강제)					
영업부문 기타통화 포지션 현황표 작성				*) 재무부문 외환포지션 현황표 작성	

* 포지션현황표는 금일, 1개월후, 3개월후에 대해 작성.

비율에 매출액변화분을 곱하는 比率分析(ratio-analysis)과 유동성예측에 의한 비교방법이 있다.

환노출파악의 방법은 B기업의 예를 통해 表로 나타내면 <表 3>과 같다.

7. 意思決定

기업에서 환위험관리와 관련 내려야 할 의사 결정 내용은 커버의 시점(when?), 커버의 범위 (how-much?), 커버의 方法(by what?)의 세 차원으로 구성된다.

각 요소별로 의사결정의 성격과 基準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① 커버의 時點: 이는 근본적으로 換率의豫測에 의해決定되는 것으로 완전커버의 경우에는 커버가 즉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시점선택의 문제는 별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업이 커버 시점을 선택한다는 것은 기업이 選擇的인 커버정책을 취함을 묵시적으로 전제하며 기업의 예측능력이 시장보다 우월함을 전제로 한다.

② 커버의 範圍: 커버의 범위 결정문제는 換危險管理政策上의 事前的인 범위결정과 외환시장의 상황에 따른 狀況別 커버범위의 調整問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첫번째, 정책상의 커버범위 결정은 어떤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선택의 문제라기 보다는 최고경영층 및 주주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결정되는 哲學的인 성격을 띠는 문제이다. 선택의 대안에는 모두 커버하는 정책, 전혀 커버를 않고 완전노출을 시켜 두는 정책 선택적인 커버를 하는 정책이 있을 수 있다.²⁾

두번째, 상황별 커버범위의 조정문제는 선택적인 커버정책의 경우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때에 따라서는 완전노출도 허용한 선택대안이 될 수 있다.

2) 여기서 반드시 언급해 두어야 할 것은 정책상의 완전커버나 완전노출은 경영상으로 허용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완전노출은 기업의 영업성과를 운영에 맡겨두는 것으로 결국 환위험을 무시하는 정책(곧 모든 결제를 현물환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의미)을 뜻한다. 그러나 이는 환노출의 비중이 극히 적은 기업의 경우에만 적합할 뿐이다.

반면 완전커버는 시장이 완전시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소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듯 맡겨두는 (곧 기업의 환율예측은 무의미하다고 여기고) 정책을 취했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효익은 안정적 영업이익 확보 및 사업계획수립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익은 선물환계약의 고정비용(일종의 보험료)을 감수하며 선택적 헷징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이익을 포기한 댓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완전노출보다 고정비만큼 비용이 더드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문제는 외환시장의 상황에 따라 최적의 커버범위를 선택하는 문제로 넘어간다. 이론상으로는 커버시점과 커버방법을 시뮬레이트해서 최적커버범위가 결정되겠으나 대개 기업은 사전적으로 환율동향에 따라 몇 %를 커버하고 몇 %를 노출시켜 두겠다고 정해두고 이를 조정하며 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③ 커버의 方法: 커버의 方法은 바로 커버의費用을 결정하며 여러가지의 대안이 있을 수 있다. 크게 나누어 은행을 이용하는 對外的인 기법과 그렇지 않은 對內的인 기법이 있는데 비용면에서 對內的인 기법들은 경제외적인 비용(이를테면 신용의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정조건을 충족시켜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기업들이 커버기법 선택시 의사결정의 기준으로는 利用可能性(법적제재가 있거나 특정조건이 필요한 경우), 각 대안의 효익—비용관계, 의사결정의 탄력성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8. 内部統制

經營統制란 경영총이 목표를 향해 조직을 인도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폭넓게 정의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진행중인 활동을 모니터(moniter)하여 이미 작성된 표준(또는 기준)과 비교하여 과리가 있을 때 시정조치를 취하는 피이드백과정이다. 이의 실행방법으로는 정책과 절차를 통한 방법, 성과의 측정과 피이드백에 의한 방법, 보상을 통한 동기부여의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① 환위험관리에 있어서 정책과 절차에 의한 통제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업무분장에 의한 직무상의 이중통제, 사내선물환제도를 통한 통제 등이 있을 수 있다.

社內先物換制度는 국제금융부가 하나의 은행

〈表 4〉 階層別 換危險管理 意思決定內容과 所要情報

	意思決定內容	所要情報
去來處理 딜리리 오퍼레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定期的인 資料收集 —換率, 換露出, 커버비용 • 資料의 轉換 및 報告 —換露出포지션把握, 換率移動平均 등의 계산 • 去來의 執行·記錄·帳表處理 電算入力 —露出 및 커버대장의 생성 	左 同 (意思決定 事項이 없음)
業務統制 (課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去來의 確認 • 露出포지션의 統制 및 去來結果의 分析 • 去來의 指針履行 確認 • 換率의豫測體制 運營 • 커버기법별 비용/위험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換露出 記錄臺帳 • 換露出 管理(커버) 臺帳 • 銀行의 確認書 臺帳 • 各 源泉別 換率豫測情報 • 換去來對象 銀行別 費用 分析資料
管理統制 (部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버技法 및 時點의 選定 —기법의 彈力性 評價 • 現業部署의 管理內譯 統制 • 換管理內容의 評價보고 —換差損益 報告 —커버의 성과보고 • 換管理 對策委報告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流動性 • 커버위험/費用 分析 • 換率豫測情報 • 現業部署의 管理內譯報告 • 換差損益 및 커버成果 • 換露出特性 分析情報
戰略計劃 (財務本部長) 財經擔當 理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換危險管理 目的·管理對象·換露出許容危險水準의 指針화 • 커버범위의 결정 —事前的 政策上, 전술상 • 換危險管理 戰略의 再評價 • 換危險管理組織開發 • 各 部門間 調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最高經營層의 위험에 대한 態度 • 換擔當部署 및 關聯部署의 管理能力 • 換危險管理評價報告書 • 各 部門別 調整案 • 換率추세분석자료

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 지침상 영업부서로 하여금 전액커버를 하도록하여 영업부서에서는 안정적 이익을 확보하게 하고, 국제금융부의 통괄적인 외환조작을 가능케하여 결과적으로 국제금융부의 독자적인 외환관리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② 성과측정과 피드백과정에 의한 평가는 환위험관리가 그 특성상 성과의 평가시 객관적인 기준을 검출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방법이 된다. 예를들어 영업부서에 있어서 실제 발생한 환차손익의 규모, 국제금융부에 있

어서 기회손실의 감소분 등을 환관리의 평가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정확한 성과측정을 위해서는 국제금융부를 하나의 이익센터(profit center)로 인식, 조직차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

③ 환위험관리란 근본적으로 管理人力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본다. 따라서 전담부서 및 관련부서의 담당자를 동기부여 시킬 수 있도록 경영자는 적절한 보상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III. 韓國企業의 換危險管理 事例研究

A-1 管理目的

	(A)	(B)	(C)	(D)
管理目的의 내용과 示化의 準	<p>① 韓國企業에서 수수되는 모든 의환에 대해서 외환관리자체를 가지고 있지 못하여, 따라서 明示된 환율에 대한 확실성을 시점에서 환율제조자 선의 전액을 커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율수수료에 대해서는 주제로 한다.</p> <p>② 그룹 <외환관리자체>을 떠나며 본사의 환율제조자를 마련하여 저점으로 한다.</p>	<p>① 명시된 외환관리자체를 가지고 있지 못하여, 따라서 明示된 환율제조자를 가지고 있지 못하여 관리목적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한다.</p> <p>② 또한 B기업은 커버여부의 결정권한을 협업부서에 의해 영업부문에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p>	<p>①은 B기업과 동일(암묵적)</p> <p>② 부서 내부적 지침에 환율수수료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정해 두고 있으나, 지침위배시의 제재 등의 통제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룹 차원에서는 <그룹 외환관리 협조체>가 지침으로 마련되어 업무흐름 등이 명시되어 있다.</p>	<p>D기업에서는 금년(1988년) 4월부터 환율 험 관리자체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침에는 환율 험 관리 목적이 하나의 험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환율 험의 차이에 의한 환율수수료화 이익에 환포지션 조작에 의한 환차익의 도모도 적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 지침위배는 배지의 통제에 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p>
換差益 도의 정도	<p>A기업은 사내전문업체로 체택하면서에 각 협업부서는 환율 험 관리 전담부서에 반드시 무조건 커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협업의 입장에서는 환율수수료를 통해 영업이익의 안정화 보장을 도모한다. 그러나 전담부서가 대외적으로 대응형태약을 통한 커버시에는 환율예측에 의거 선택적 험지도 사용하고 있으나 그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p>	<p>B기업은 분권적 환율 관리를 수행함에 따라 환율의 사결정권이 각 사업부에 있고 환율관리체계의 미비로 떨어진부서는 단순화형의 역할만을 하고 있는 바 실체 환율(결과적)으로 환율수수료를 위한 환율기준(비중)의 비중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p>	<p>C기업은 일자기 적극적 외환관리를 실시하여 왔으나(1981~1984년) 1985년 이후 최근까지는 협업부서의 소속국적 관리를 띠고 있다. 그러나 올해(1988년) 들어 외환관리 조치를 확대하고 적극적 전략을 세워 험자체의 경우 80% 이상, C기업 자체의 경우 80~90% 이상으로 늘어났다.</p>	<p>D기업은 손익 관리부서(현업)에서 1차적으로 커버한 환율수출에 대해서 2차적인 환율지원조직을 구체화하여 용함으로써 실제 환율수수료를 위한 거래의 규모가 사례의 여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D기업이 특포현장 손익을 창해두고 운용하고 있다는 데서도 추론할 수 있다.</p>
회고 경영 의 관성도 및 신뢰도	<p>A기업은 회사의 이미지 자체가 관리체계의 우수성이 알고 하듯 관리에 있어 서도 사내 전문업체로 구비하는 등 선도적 입장에 있다. 차가 ‘판리상에 문제’가 있으면 상충에 제안하여 수정된다’고 말할 정도로 최고경영층의 관심도도 높다.</p>	<p>B기업은 전통적으로 사업부 중심체계도에 의해 각 사업부의 독자적인 사결정권부여 및 성과 평가에 중점을 두어 있다. 최근 B기업은 국가제금융부의 환율 관리체계를 바로 비하여 절전적인 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아직 개자는 그치고 있으나 이의 실행을 위해서는 청탁에 중요한 성과에 대한 이해가 끌고온다.</p>	<p>기업내 최고경영층의 환율 험 관리에 대한 인식은 점차 높아가고 있는 상태이다. 환율 험 관리조직을 외환과 달인으로 승격시키고 금년내 기업내에 국내의 자금운용을 위한 일정률을 설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차별, 환율이 기업이 익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에 따라 인식이 세로와 전례 기인한다.</p>	

A-2 管理對象

(A)	(B)	(C)	(D)
企業의 换 露出 특성 및 인식도	환포지션의 특성별로 확정, 불확정 의회부채 포지션으로 나누어 인식하고 있다. 종합상사인 A기업은 US\$ 성별 파악은 않고 있다.	C기업은 무역부문과 전설부문 A의 2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무역부문의 차별화 대변은 매부문의 경우에는 US\$, 중동통화로 구성되는 차별화 하도급으로 인해 주로 DM과 유로 구성을 위해 주로 DM과 US\$으로 구성돼는 매번간에 환노출이 발생하고 있다. 중동통화는 US\$로 모두 즉시 전환되는데 따라서 D가 주요 환위험 관리대상이 있다.	D기업은 제조업으로 상사인 A~C기업과는 달리 환노출이 거래단위별로 단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조, 판매의 전과정에 걸쳐 연속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의 환위험 관리보다는 계약시점에서 포함으로 커버를 한다.
管理對象 抽出의 범위	A기업은 4개 기업중 유일하게 현지 확정포지션(A型) 외에 현지 미확정 포지션(B型)을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다. 前者에 대해서는 관찰부서의 무조건 신청에 의한 즉시 커버, 후자에 대해서는 전별로 최적 방법을 고려하여 결정을 한다. 외화포지부채에 대해서는 필요시에만 커버를 한다.	B기업의 관리대상 환노출은 주로 A-1형의 거래처 환노출로 미 확정계약에 대해서는 관리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해당사업부의 환율에 대한 인식수준과 관련을 가지는데, 체무부문의 외화차입금은 자금부(US\$)와 국채금융부(기타통화)에 의해 불완전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화예금은 차금부가 관리하고 있다.	C기업은 관리대상 환노출은 그룹 차원의 환관리도체 조치를 마련하여 ⅰ) 기축 자가 안정적 영향을 하도록 도모하고 ⅱ) 그룹내 환관리를 철강화 운용하고 있다. 그 방안은 정부 도록 하고 있다. 그 ⅲ) 차금을 유통업체의 환관리를 하여 그룹내 바팅(netting)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단, 이는 #-US\$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이종통화에 대해서는 각 기업이 운영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
그룹 차원의 포함여부	그룹 내 실에서 그룹 전체의 환위험 관리규칙을 만들어 각 사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 실제 각 사업부에서 평가를 하고 국제금융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룹 전체의 환관리를 하지 않으며 관리의 환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체제도 각 계열사별로 특성과 능력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B기업 자체의 환위험 관리도체인 경영체도에 입각한 사업부 중심의 분권적 관리를 하고 있어 그룹 전체의 환위험 관리는 더 더욱 풀관체의 경보교환 등의 이루어지지 못하며 경보교환 협력체계도 원활히 운영되지 고 있다.	그룹 차원의 환위험 팀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어서 외환시장정보를 수집하여 각 사에 배포하며, 그룹내 소규모 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대행하고 있다.

B-1 組織構造

한와협 관리 조직의 기 업 천체의 위치	(A) A기업의 한와협 관리조직은 국제 금융과 내의 외환관리팀(팀장인 대리와 팀장인 7인)이다. 인원상으로는 비교적 많으나 전담조직의 수준은 조직천체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한와협은 점에 의해 사내 선물·환·제약이의 무역이 있고 이의 외판사·제조업체·국제화된 기업과 같은 기업에 비해 낮다. 또한 업무 분담에 있어 자금소요와의 연계의 필요성을 이유로 자금부에서 W-US\$ 선물환거래를 남달고 있다.	(B) B기업의 한와협 관리조직은 국제 금융과 내의 외환관리팀(팀장인 대리와 팀장인 3인)이나, 앞서 제속 언급했듯이 기업천체에서 전담조직의 역할은 분권화에 따라 “단순대형”의 역할인 바. 실제로 있다. 오히려 협체의 전담조직이 인원면에서나 수준면에서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 부서별 경쟁을 염두에 두면서 외환부로 변경한 것도 외환부문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	(C) C기업의 전담조직은 외환관리부내 외환관리팀(팀장인 대리와 1파(팀장인 5인))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기업천체에 위치는 그룹내 외환관리부를 통한 충돌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타기 업에 비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협체의 전담조직이 인원면에서나 수준면에서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 부서별 경쟁을 염두에 두면서 외환부로 변경한 것도 외환부문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	(D) D기업의 한와협 관리조직은 외환관리부내 외환관리팀(팀장인 대리와 5인)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기업천체에 위치는 그룹내 외환관리부를 통한 충돌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타기 업에 비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협체의 전담조직이 인원면에서나 수준면에서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 부서별 경쟁을 염두에 두면서 외환부로 변경한 것도 외환부문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
한와협 관리 조직의 업무 분장의 체계 정착	한와협 관리조직은 2부분으로 나뉘어 양 조직 모두 대리직급의 담당자가 관할한다. 2부분이란 한와협 관리의 실체과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조직과 (대리 1人-사원 5人) 활용정보분석 및 예측을 전담하는 조직(대리 1人-사원 3人(2人은 女))이다. 통화별 분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B기업의 한와협 관리조직의 특징은 이부분에 걸친 한와협 관리의 업무분장이 과중하여 실수의 체크 및 부정의 방지가 시전체으로 불가능하다는 차별, 외화자금의 이체시 인장사용 및 BEP 원을 결정 등에 있어 자금부에 결제를 이루어야 되는 등의 관행이 협체의 독자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사원이 한사람씩 기타통화와 #—US\$ 환거래를 담당하며, 오래 이전에 분기되어 있고, 대리가 규모가 큰 거래, 계열사 업무 거래의 통제를 담당한다. 대장은 정체적 포지션 관리 협의를, 본부 이자율 관리, 수익, 통화 천만에 따른 3급사원이 관리하며, 대장은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각 통화의 환율추세나 환포지션 조작은 5人の 학제를 채택한다.	체화조직 단위인 외환과는 과장, 3급사원 1人, 평시월 3人으로 구성된다. 외환과의 업무분장은 형식상 통화별로 US\$—¥, US\$—ユ로통화, US\$—₩을 평사원 3인이 각각 분담하고, 이자율 관리, 수익, 통화 천만에 따른 3급사원이 관리하며, 대장은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각 통화의 환율추세나 환포지션 조작은 5人の 학제를 채택한다.
관련부서 외의 조정을 위한 체계 정착	공식적인 조직은 없다. 단지 비공식적이며, 개별적으로 국제금융부에 서 벌여서 협업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국제금융부의 위치가 단순거래 매체의 위치이며, 각 사업부는 독자적인 의사결정 체계에 의해 운영되는 한 외환 관리부의 조정을 위한 체계로, 관리부서 외의 조정을 위한 체계로 정체의 필요성을 별반 느끼지 않고 있다. 국제금융부에서는 수시로 협업 담당자를 교육하는 과정 있다.	C기업의 경우는 실무 담당자 차원에서 협업파의 조정을 위한 조정은 구비되어 있지 않고, 다만 부서장급을 대상으로 월 1회의 협회를 대체화가 열린다. 여기서는 각 지역을 관리하는 부서장의 협회간 경제교류가 이루어지거나, 교류의 주제로 한 외화와 원화에 대한 협회와 함께 공동으로 협력하는 협회를 공동으로 운영된다.	D기업은 전사적인 한와협 관리를 위해 외환대책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금융부, 심사부, 수출기획부, 해외구매기획부, 경리부 등의 부서가 참여하고 있다. 운영은 심사부에서 주관하며 대체위에서는 방침, 회의록 등을 통해適用攢集, 통화변경지침 등을 차부서에 전달한다.

B-2 業務手順

(A) (B) (C) (D)

業務處理 過程	① 사전 협의 단계 : 원업부서는 국제 금융과에 거래 통화, 오ペ서기, 성사 시기, 비고(nego)에 정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청정수주권을 협의한다. ② 수출계약 및 선물환 계약 : 한의 내 용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 국제금융과에 천액 사내선물환 신청을 한다. 국제금융과는 시전협의 단계부터 커버여부를 결정하고, 내부 환매 청 가능성을 검토하여 매칭이 불가능할 때 매출행 선물환 계약을 수령한다.	현업부서에서 기타통화 내고체 회 을 통보하면 국제금융부는 자금 부와 BEP협동협의를 하고, 은행에 계 약을 한뒤 부정기록 보고한다. 자금이체서에는 자금부에 자금 의 레지를 하고 자금부에서 네고은행에 이체신청을 한다. 국제금융부는 자금부에 자금부에 자금을 수취하여 계약 제약은행에 이를 제출한다. 확인서에 소요되는 대표이사 인감은 이를 협조한다.	i) 각사는 수출입거래 및 차본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종통화포지션을 발생하는 C기업으로 통보 한다. ii) C기업은 통보받은 주 시, 이종통화포지션을 각사의 명 의로 선물환거래 등기 타석될한 수 단으로 처리한다. iii) 선물환 등 원자재계약후 서류준비 및 계약 협은 각사가 청정수행이며 C기 업은 이를 협조한다.	① 손익판리부서는 경영계(사업계 또는 자금계회)을 근거로 일정기간 (3~12개월) 동안의 통화별 원노출규모를 파악·인식하고 월별 통화별 입출금 사항으로 구분 작성하여 매 분기시작 전월 20일까지 국제금융부로 통보한다. ② 손익판리부서는 해 당부문별 노출 규모, 선물환포지션현황, 경영계회상적 용환율 및 향후 환율전망 등을 고려 하여 천액 커버를 위한 의환거래를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 차기체 입회에 국제금융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국제금융부는 손익판리부서의 의 판관리의 대형이외에 파악된 전사 종 원노출을 기준으로 환포지션 조작을 하며 전사 환차손익 관리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
業務處理 段階別 所 要期間	A기업은 사내선물환체 도를 체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업부서(영업 및 재무)는 포지션 발생 즉시 국제금융과로 사내선물환 계약을 신청해야 한다. 국제금융과는 현업과의 시전협의 단계부터 커버여부가 결정되어 있으므로 내부 청결 규정에 따라 매은행 선물환 계약을 주식 청결한다.	B기업이 업무처리과정에 있어 여터기업과 다른 점은 멀티인 체택이다. 멀티인 커버여부를 함께 취급하고 있는 철파 BEP 활용협의, 자금이 있는 철파 인증서와의 일정사용 등에 있어 자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업무상의 관행과 규정이 있다.	C기업의 업무처리과정은 제일 사내선물환의 대형인 경우 2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체택사 자체내에 서 커버의 사전정성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을 밟은 후 C기업은 커버 여부의 신청을 범부의 C기업 사업부에 커버 여부로 결정된다. C기업은 그룹내 모기업으로 철파사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소요시간면에서는 체택사 자체의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내부 청결 규정은 손익판리부서의 신 청에 대한 확인 커버의 경우 외국제금융부의 환포지션에 의한 커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자의 경우 청결 규정에 차이가 없이 금액과 보유포지션 비율에 따라 각각 차장, 부장, 임원, 부회장 순으로 1천만, 2천만, 3천만, 5천만불 또는 보유 포지션의 10%, 20%, 30%, 50%로 청결화되어 양지중 큰 것을 각 계층의 청결 한도로 정해 두고 있다.(청결구조이 관리자침상에 명시된 것은 아님)

C-1 檢率警測

	(A)	(B)	(C)	(D)
情報源의 適正性과 선택기준	A기업은 AP-DJ screen를 통해 매일의 환율자료를 받고 있으며 10여종의 문서 환율자료를 구독하고 있다. 또한 해외지사로부터의 현지환율정보제공 체계가 갖추어져 수시로 보고받고 있다.	정기환율 정보원으로 FX-Market Report 등 10여종의 정기간행물과 단기정보원으로 BTC Weekly 등 5종, 금리 정보원으로서 Interest Projection 등 5종이 있다. 또 AP-DJ printer, Citi-terminal screen을 통해 매일의 환율자료를 받아보고 있다.	AP-DJ telelater screen을 구비하여 매일의 환율자료를 받고 있으며 WBFA와 10여종의 문서자료와 지사의 정보 제공 체계에 의존하고 있다. 한가지 특이한 것은 C기업이 AP-DJ telelater를 구비한 것 이 국내체조기업 및 상사로서는 거의 최초로 1983년도 이었다는 것이다.	사례의 데 타기 업과 마찬가지로 AP-DJ screen과 WEFA와 10여종의 문서자료와 은행의 코멘트(comment)가 주요 정보원이다.
情報의 적 确 信 성	① 한 주관부서에서 각 관찰부서의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각종 의환정보를 정기적으로 작성 배포한다. i) 日日通貨別 환율 및 이자율(日別) ii) 국제금융시장 동향速報(수시) iii) 주요국 경제 및 환율의 동향(月別) iv) 국제금융 동향 및 전망(分期別) ② 환율정보는 월별로 각 사업부에 확산되며, 환율자동응답전화를 가동하여 현업의 문의에 신속히 응답하고 있다.	① AP-DJ 통신의 FX/money mkt. highlight 보고서로 본부장 가지 보고하면 통화별로 환율그레프를 작성(현물환율 및 1주일, 1개월 이동평균선)하고 전산터미널에 입력하여 해당 파일에 보존한다. ② 예측치의 폭과 방향을 중시하여 일정 양식으로 요약하여 각 원·차별 가중평균 값을 80%, 당부서 의견을 20% 반영하여 예측환율을 결정한다.	① 1일 의환정보, 의환시장 개황 등 1일 정보자와 월별로 현율급리정보, 의환시장 동향 등을 작성해 표하고 있다. 환율그래프는 차선자부문 기업 및 부서에 배포된다. 국제금융부에서는 부서내 한쪽벽면에 차트를 붙여 놓고 매일 생산하고 날에 담당자 1인을 보강하였다. ② 각종 정보는 부서원이 부장·과장·대리·사원의 순으로 회복·회의(우체한) 의견을 예측치로 한다.	AP-DJ screen과 코멘트로 부터 얻어진 자료는 1일 환율동향 이라는 정보를 통해 100여군데의 그룹내 전기 차금융부에 배포된다. 국제금융부에서는 부서내 한쪽벽면에 차트를 붙여 놓고 매일 생산하고 있다. 환율자료는 파일에 저장되며, 환율분석단을 전담하는 전담자는 특별히 자정까지 앉고 있다.
情報源의 변 動 도	각종 정정보원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는 환율현 관리팀(팀장: 대리)의 담당자가 분석하여 정리하고 팀 구성원의 의견 중 우체한 것(구체적 기준은 미비)을 예측치로 한다. 환율정보의 분석과 예측을 전담하는 조직(대리와 3人)이 달링조직과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B기업은 데 타기 업에 비해 환율 예측 정보에 대한 체계가 잘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53세 정도의 주요 정보원을 선택하여 이들이 산이한 경우의 처리과정의 명시판을 가중치의 산정, 수집된 정보의 배포를 위한 7종의 일간부터 기간까지의 자료, 중요문서(hot issue)의 보고 등이 구비되어 있다.	형식상 팀구성원의 핵심인 박나, 담당팀원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다. B기업은 분권적 헌위협관리를 병행하는 제조기업인 바. 환율고시의 필요성이 없으며 제조 및 영업부서의 문의사항에만 환율의 추세, 현재 환율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금융부의 환율조작을 위한 환율에 축과정을 위한 관리과 부서원들의 협의체로 운영하고 있다.	

C-2 换算出把握

	(A)	(B)	(C)	(D)
情報源 및 파악의 방법과 절차	A기업은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사적인 환노출도 각 사업부가 자체내 역할을 일관화하고 동시에 전 산체 통제에 국체금융부에서 수시로 이를 파악하고 있다.	B기업은 영업부문의 US\$ 노출을 제외한 전사의 확정 및 불확정 환노출을 파악하고 있다. 영업부 라인화되어 매일 1회 이상 프린트 문은 i) 자발적 보고에 의한 방법 ii) 전산온라인을 이용한 방법 iii) 수지 체크에 의한 방법을 통해 한 노출이 파악되는데 표지선 현황은 전산으로 자동파악되나 각 사업부의 실체 커버 내역은 주체금융부에서 파악 할 수 없다는 관리상의 단점이 있다. 재무부문의 표지선은 정부를 이용하여 파악하고 있다.	영업부문의 수출에 따른 수취통화에 대해서는 1984년 말부터 온-오프라인화되어 매일 1회 이상 공문 통제에 유선통보로 유선통보부에 의한 방 법은 유선통보부에 대해서는 유선통보부에 의해 파악하고 있다.	D기업은 제조기능이므로 생산과 경영부에는 비 전별 보고에 의해 전별 커버가 의미가 없다. 따라서 환노출파악을 위한 주요정보원은 협조사업체에 사의 통화별 수입/처출에 상례에 의해 사전적으로 예측된 환노출이다. (3~12개월) 이와 아울러 D기업은 월별로 실체 발생현황의 회수자 실적 보고를 통해 커버내역을 수정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전산화 시 스템의 설치 정도	1987년부터 환노출을 전산체 입출력 파악하고 있으며, 수주내용, 배운현금, 인도금액, 잔액 등이 입력되어 커버, 원천손익, 계산방법을 통해 즉시 필요시 온-라인 전산망을 통해 환노출과 원천손익 계산방법이 가능하다. 환노출 기능이 가능하여 결과 발생한 원천손익 계산과 청탁도 전산화되어 있어 예타기업에 비해 가장 정직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B기업에서 전산온-라인을 통해 표지선 수출포지션, 수입포지션, 선물환포지션이다. 수출 수입 포지션, 선물환포지션이다. 수출 지급통화부분(수입)은 전산화가 되고 있지 않다. 그 후 부서별 기타 통화 현황표를 통해 주문잔액을 파악하고 주문수출포지션의 경우 주문수입포지션의 경우 L/C 개설 및 환율변동에 따른 수입포지션의 경우 L/C 개설 현황표를 작성해 주 잔액 파악을 하며 그 형식은 전산실에 출력의뢰를 통해 한다.	포지션과 일부분은 수취통화(수출)의 경우는 전산화가 되어 있고, 일부분은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고, 통화별 분기 시각전월 20까지 월별, 통화별 입·출금사항으로 구분작성하여 보고하고 있다. 포지션과 약자체는 수직업이나 거래시점 이후부터 즉 포지션의 사전, 사후 관리측면에서는 예의하고 있지만 원천손익 세분류는 발생원인별로 세분되어 파악되고 있다. 최근 D기업은 시티은행으로부터 환노출파악 PC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 운용하려 하고 있다.	부분별 환노출 파악의 주체는 손익 관리부서이며 분기별로 세부에 의해 매 분기 시각전월 20까지 월별, 통화별 입·출금사항으로 구분작성하여 보고하고 있다. 포지션과 약자체는 수직업이나 거래시점 이후부터 즉 포지션의 사전, 사후 관리측면에서는 예의하고 있지만 원천손익 세분류는 발생원인별로 세분되어 파악되고 있다. 최근 D기업은 시티은행으로부터 환노출파악 PC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 운용하려 하고 있다.
예측환노출 의 파악 및 점검의 현상	예측환노출은 파악하고 있지 않다. 자체적 원천손실도 빌더가 개인적으로 의사결정에 만 고려할 뿐 제도화된 손실 계산에 있지는 않다.	左 同 同 左 同 同	기본적으로 경영계체(사업체 회계, 3개월 차금체계)이 예측환노출에 의해 여지며 이때 심사부에서 예상현손익을 계상하여 이사회의 보고한다. 국제금융부에서는 사업체 회계상의 예상현율을 실제 환율과 비교하여 평가, 현차손익을 계산한다. 기준커버 포지션으로 현제환율로 환산하여 철저히 환손목적을 예산하여 본부자체 등의 환손목적을 실행한다.	

D-1 意思決定

	(A)	(B)	(C)	(D)
A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은 현업의 거 버 신청이 있는가에 따라 구별 되어 정해진 외임전결규정에 의해 처리된다는데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 되어 있어서 활용변동 외험의 수준에 따른 전결처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A기업의 의사결정과정의 또하 나의 특징은 사전협의 단계부터 커버 여부 결정이 이미 끝쳐져 있다는데 있어 또한 현업부문에는 사내선물환 계약을 통해 무조건 커버를 의무화함 으로 의사결정과정을 단순화하고 있다.	기업 전체적으로 볼 때, 업무부문 의 노출은 해당 현업부서에서, 제 무부문은 국제금융부와 공동으로, 현지금융에 서의 노출은 해외현지법인이 관리하여 의사결 정을 하고 있다. (B기업은 점차 국 제금융부 중심 체계로 전환하기 위 해 계획 중에 있다.) B기업의 경 우 외환에 대한 인식수준이 아직 낮아서 커버를 투기하고 회피하여 오하려 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C기업의 의사결정과정은 C기업 업자체와 그룹전체의 환노출에 해서도 동일한 절차로 처리된다. 일반적으로 일련의 예전에 청탁된 후결제의 원칙이 적용되며 결제과 정도 관련규정에 의해 처리된다. 그룹내 거래은행의 경우 커버여부 제금융부 중심은 각사의 담당부서에 의 결정권한은 각사의 담당부서에 있다. 그룹내 환율리는 개별기 여부 보다 전체적 환노출의 파 미커버된 부분의 커버 등의 의사결정 을 내릴 수 있다.	경영체 회상 원가 및 수익을 학정시 기 위해 순익판리부서의 환투기를 금 지하여 100% 커버를 원칙으로 하고, 순익판리부서의 기간 평균 환위험 커 버 비율을 3개월간 평균 환노출의 50 %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즉, 커버 의 사결정권은 1차적으로 순익판리부 서에 있으며, 국제금융부는 자자체 입 회에 외환조작을 통해 반대거래, 또는 미커버된 부분의 커버 등의 의사결정 을 내릴 수 있다.	
5 커버기법 사용내용과 우천순위 고려사항	내부문 선물환거래를 통해 커버가 이루어지며 따라서 주요 의사결정문 제가 커버나 오픈 포지션이나 선택의 문제이다. 불확정거래가 아닌 한 읍션은 사용하지 않으며 전설수주 계약에서 몇 차례 익션을 사용한 바 있다. 각 기법간의費用의 비교는 하 고 있지 않다.	A기업과 동일	A기업과 동일	기본적으로 선물환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외환매매위를 통해 저침전달 및 사 용내역의 파악이 이루어지며 여러 내 부기법은 상대적으로 결제통화변경, 선지급 후지급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 다.
의사결정내 용의 수장 및 취소 조 정의 제도	사내선물환체약의 인도가 불가능하 것을 경우 자체없이 관할부서는 국제 금융부에 사유·상와 함께 취소신청을 해야 한다.	未	備	D기업에서는 경영체회(3~12개월 사업체회과 자금체회)에 의거하여 순익판리부서에만 가능한 한 50% 이상 의 커버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순익판 리부서 책임자의 커버는, 차후의 환율 의 추세, 환노출 내역의 변동 등의 경 우에 있어 국제금융부의 책임에 의한 환조작에 의해 수정 및 상쇄(off-set) 될 수 있다.

D-2 内部統制

(A)	(B)	(C)	(D)
밀러—오페 레이터—콘 트롤러의 상호견제	B기업의 경우에는 한사람의 일 력이 오래이터에 제약 즉시 배임/ 부정으로 부터를 차단하는 체계인 한 사람의 일도 일을 체크인하지 험 하게 오페레이터의 역할까지 확장 된다. 오페레이터는 털러로 부터 제약 수령 즉시 온행의 오페레이터에게 제약비용을 제작인하여 제약서 내용 과 비교검토한다. 대은행 선물환체 약정에 기입하여 당일 중 일어난 거 리는 당일 결제를 벌여서(부정전결) 제약비용을 전산 입력한다.	<표 4>처럼 대부분 동일하게 업 무 분장이 이루어져 있고 상호견 제가 되어 있으나 확인서의 수취 및 결제가 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며 오페레이터의 업무능력부족으로 만 기거해 리스트 등과 같은 업무를 는 딜러 콘트롤러가 일일이 확인서 를 확인해야 하는 부담도 갖고 있 다. 이러한 협상을 B기업이 부른 체 유통업체 관리방식을 체택함에 따 라 선물환체액 신용비율이 떨어질 때마다 오페레이터의 필요성을 기지지 못하는 데에 있다.	C기업과 마찬가지로 오페레이터에 의한 즉시 제작인 과정이 없으며 은행 의 확인서가 온 후에야 제약서와 비교 통제가 가능하다.
환자금관리 전달부서의 권력내역 형가기준	未 備	未 備	未 備
환자금관리 전달부서의 권력내역 형가기준	(단, A기업은 사내선물환체제도를 체택하는 바 그 운용실적에 의해 평 가가 가능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본 다.) 한 주관부서—시간의 경증에 따라	(단, 환자금관리부서의 평가체 제의 마련을 위한 자체부서의 준비 가 있으며 또한 C기업에서는 영업 부서와 관리부서의 우수부서에 대 해 평가하여 포상을 하는 제도가 있는바, 외관부서에서는 커버를 통한 순찰의 축소분이기는 계관부서 인 지표가 존재하므로 하나의 통 기부여 요인이 될 수 있다.)	순익 관리부서와의 의회거래 발생한 환자금의 평가체 제의 마련은 해당부문으로 청 부부한다. 반면 환자금의 조작에 의한 환자금의 부문별 적절·계속분을 제외한 자액이 국제금융부의 업체평가 기준이 되는 환자금의 수출실적)에 의한 환자금의 평가제는 계관부서를 부문별로 배부한다. 업체평가는 담 당임원 인사고과 기업의 목표환자금을 제해 놓고 운용하고 있다. (1988년 20 억원)
사내선물환 체도의 구 비	의회전달부서가 원물환율(前營業日 뉴욕시장마감 현물환율)에 선물환마 진과 국제금융부 거래비용을 더한 사 내선물환율을 현업부서에 고시하고 부여함으로 이 원율로 무조전 커버를 하게 하여 내부 원래환율 대은행 선물 환계 약을 체결하고 있다. 부서(국제금융부)는 거래비용을 조정 하는 방법에 의해 국제금융부 귀속 환자금이 국제금융부 계도를 운영한다.	未 備	未 備

IV. 結 論

1. 研究의 要約

본 사례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기업(종합상사 3개, 제조기업 1개)에 대해 직접 인터뷰에 의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사례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전체기업을 과연 대표할 수 있는가에는 다소 한계가 있겠으나 1차 인터뷰를 통해 10여개 정도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환위험 관리체계를 조사하였으며, 그 중 관리체계가 비교적 정비되었고 그 특징이 분명한 기업들을 1개그룹 1개사 원칙에 따라 선정하였던 바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사례연구는 환위험 관리체계를 관리체계, 조직체

계, 정보체계, 의사결정체계의 4개의 체계와 8개의 하위체계로 구분하여 8개의 하위체계 각각에 대하여 환위험 관리상 핵심이 되는 3개씩의 평가항목을 선택총 24개의 항목별로 4개의 기업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총 24개의 평가항목은 가능한 한, 기업이 어느정도 비협조적인 것을 감안 보다 세부적인 객관적 지표를 질문하여 간접적 추론을 하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객관적인 사실의 나열보다 왜 그러한 특징을 나타내게 되었는가라는 객관적 사실의 이면에 있을 수 있는 관리상의 형태적인 측면(behavioral aspects)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례연구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가지는 특징을 평가항목별로 요약·정리하면 아래 <表 5>와 같다.

〈表 5〉 事例研究內容의 要約 (1)

		要 約
下位 體制	管 理 目 的	<p>換危險管理의 目的是 관리전반의 기초가 된다. 사례의 4개 기업 중 ①⑪기업만 지침상에 명시화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③⑩기업은 암묵적인 관행에 따르고 있다. 지침상의 명시화된 내용이든 암묵적인 관행이든 4개기업은 모두 원칙적으로 환차손의 극소화를 우선하고 市況에 따라 환차익도모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환차익 도모의 정도에 있어서는 각 기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社內先物換制度를 채택하여 협업의 완전커버를 보장하고 국제금융부에서는 대은행 계약서 선택적 헛지(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음)를 실시하는 ④기업, 사업부 중심의 분권적 환관리를 수행하나 통제의 미비로 노출포지션이 상대적으로 많은 ⑧기업, 올해들어 소극적 관리에서 적극적 환관리로 전환한 ⑯기업,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해 커버를 행한 뒤 국제금융부에서 포지션조작을 통해 적극적인 환관리를 하여 결과적으로 양자를 병행하는 ⑩기업 등 여러 형태가 있다. 최고경영층의 관심도도 ⑪기업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높다.</p>
換 危 險 管 理 政 策	管 理 對象 (換 露 出)	<p>事例企業의 관리대상 환노출은 대부분이 A-1型(현재 확정 실현 환위험, 즉 종래의 거래적 환위험)만을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④기업에서는 이와 더불어 B型(현재 미확정 환위험)도 관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기업의 환노출 발생의 특성에 따라 이는 각각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自社의 환노출 특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발생가능한 B.C.D型 환노출도 인식하여, 나아가 관리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요망된다. 종합상사인 ⑨⑩⑪기업과는 달리 ⑪기업은 사업계획상의 환노출을 대상으로 하며, 그룹 차원의 환노출은 ⑯기업만이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다.</p>
換 危 險 管 理 組	組 織 構 造	<p>환위험 관리 조직은 근본적으로 커버 의사결정권의 소재에 따라, 집권화—분권화의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의사결정권이 기본적으로 現業部署에 있는 ⑨⑩기업이 분권적인 환위험 관리의例이고 ④기업은 社內先物換制度를 통해 집권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⑪기업은 분권적 관리이나 자체 포지션조작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절충형이라고 할 수 있다. 환위험 관리 조직의 기업 전체에서의 위치는 그 중요성에 비해 인원이나 조직의 위상(계층상의 위치)도 낮은 형편이다. 조직내 업무분장은 통화별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조직내 1人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심하며, ⑪기업에서는 딜러와 오퍼레이터의 분리마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관련 現業部署와의 調整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외환대체위를 구성한 ⑪기업을 제외하고는 설치가 되어 있지 못하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p>
		환노출 발생에서부터 커버의사결정까지의 업무처리과정은 사례기업 모두 유사하게 운영된다.

그리나 이러한 일상적인 업무흐름에 있어서도, 예외적인 사항의 처리과정이나 소요기간, 내부전결규정의 구비 여부에 있어서는 각 기업이 차이를 보인다. ⑧기업에서는 판할부서 신청이 있을 경우와 없는 경우로 상황을 구분하여 각 계층별 전결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⑨⑩기업은 전결규정 자체가 명시화되어 있지 않다. 담당자의 판단에 의존하거나, 일일이 임원의 결제를 취득하게 하므로 결과적으로 신속한 실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事例研究內容의 要約 (II)

下位 體制	要 約
換 率 豫 測 換 危 險 管 理 情 報 體 系	사례대상기업들은 공히 환율예측 정보원으로 AP-DJ screen 및 10여종 이상의 문서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환율정보는 컴퓨터 파일에 저장하는 ⑧⑨기업과 문서로 정리하는 ⑩⑪기업이 있으며, 환율예측시 이동평균곡선을 그려 기술적 분석에 이용하는 ⑪⑫기업이 있다. 환율예측은 대개 담의 의견을 종합하여 우세한 의견을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으며, ⑪기업에서는 이와는 달리 정보원천별 가중치와 부서의견 가중치를 정하여 객관적 기준으로 삼고 있다. 수집된 정보는 각종(日, 遷, 月, 分期) 정보지를 통해 각 부서로 배포된다. 정보원천은 AP-DJ, 은행정보 등 1급정보 원천을 모두 갖고 있어 적정하다고 보여지나, 실제 의사결정과정에 이들 정보가 반영되는 과정 및 정도에 있어서는 다소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換 露 出 把 握 換 危 險 管 理 意 思 決 定 意 思 決 定 體 系	환노출 파악은 파악방법에 있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⑧⑨⑩기업)와 보고에 의한 방법(⑪기업)이 있다. 前者的情形에도 재무부문 포지션 및 현업의 실제커버 내역은 파악이 안되는 ⑪기업, 지급통화부문(수입)은 파악이 안되는 ⑪기업, 전체 환노출 및 실제커버 내역까지 모두 전산화가 되어 있는 ⑧기업 등 실제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 出力方法에 있어서도 온-라인방식은 의해 직접파악이 가능한 ⑧⑩기업과 전산설 의뢰에 의한 ⑪기업이 차이가 있다. 예측 환노출의 파악여부에 있어서는 ⑧, ⑨, ⑩기업은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제조기업인 ⑪기업은 기업특성상 관리가 예측환노출에 근거하고 있는 바, 예측환노출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意 思 決 定 內 部 統 制	의사결정은 커버시점—커버범위—커버기법의 3차원에서 내려지는데 사례대상기업들은 모두 선물환계약이라는 하나의 기법에 대해, 즉시 커버 또는 노출의 선택이라는 단순한 의사결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미발달이라는 환경요소에 기인하는 면이 크나 점차 외환시장의 자유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때 보다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의사결정 권한도 환위험 관리조직 자체에서 볼 때 지나치게 하위층(딜러수준)에 의존되어 상충의 보다 실질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또한 내부적 기법의 사용내역에 대한 전사적인 파악이 부족하며 의사결정내용의 수정과정을 보다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內部統制에 있어서는 오류의 방지를 위해서도 오퍼레이터에 의한 선물환계약 즉시 은행에의 확인이 필요하다. (⑧기업은 이미 시행). 評價문제에 있어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社內先物換制度를 설치하여 (⑧기업은 이미 시행) 영업부서에는 안정적 영업이의 확보를 보장하고, 국제금융부는 대은행 거래를 통한 포지션조작으로 그 결과에 따라 换危險管理 내역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 經營者에 대한 提言

본 사례연구의 결과, 各企業은 自社의 특성에 맞추어 나름대로의 换危險管理體制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행히 换危險管理分野는 他分野와는 달리 우리나라 기업들이 서로 하나의 파이(pie)를 놓고 경쟁을 벌여야 하는 제로-섬(zero-sum) 게임의 분야가 아닌 까닭에, 각 기업은 서로 정보교환을 통해 여타기업이 가지는 장점을 과감히 취하고, 自社가 가지는 문제점은 점차 개선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사례대상기업의 환위험관리체계 중 다소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함으로써 경영자에게 감히 몇 가지 提言을 하고자 한다.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첫째, 환위험관리지침상 환위험 관리목적과 관리대상 환노출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못한 점이다. 우선 관리목적을 살펴보면 실제 기업에서 환차익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상당부

분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사용하는 객관적인 조건이·분명하지 않아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지침상으로 노출의 범위를 명시하고 환율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관리대상 환노출에 있어서도 그 범위가 거래적 환노출에만 한정되어 진정한 의미의 환위험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기업의 환노출 특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점차 관리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둘째, 組織體系에 있어서는 환위험관리 전담 조직의 규모 및 수준이 낮고 關聯現業部署와의 조정을 위한 최고경영층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기존의 환위험 관리 조직은 실체적으로 인원 4~5人 정도의 代理직급의 사원을 팀장으로 하는 조직인데 이를 적어도 '課' 수준까지 끌어올려 기업의 환위험관리를 전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협업과의 조정을 위해서는 그 중요성을 경영자 스스로가 깊이 인식하여 통합적인 정보시스템의 구비, 지침상의 명확한 책임권한의 규정과 아울러, 재무담당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직차원의 外換對策委員會를 설치하여 전사적인 환위험관리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세째, 최고경영자 자신이 환위험 관리에 있어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고경영자는 환율의 최근 동향 및 기업의 환노출 내용, 환위험 관리 내역을 수시로 보고서를 통해 파악하고 커버범위 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나라의 외환관리 환경이 점차 자유화 추세에 있는 점을 주시하여 이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상에 이러한 추세에 반하는 경직성이 있는가 여부를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네째, 환위험관리 부문의 관리내역을 평가할 수 있는 評價體系의 마련이 시급하다. 평가의 기준은 각 기업이 채택한 관리체제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評價體系를 구성시에는 환위험관리 부문을 그 관리성과에 따라 동기부여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